

定 款

(2015년 10월 8일 制定)

사단법인 민주주의학술연구원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

본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민법 및 공익법인의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민주주의 정치제도 및 정치문화 연구와 민주시민·리더십 교육을 통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발전과 성숙한 민주사회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명칭)

본 법인은 사단법인 민주주의학술연구원(이하 “본 법인”이라 함)이라 한다. 영문으로는 ‘The Institute of Democracy Studies & Education’ 이라 한다.

제3조(주소지)

본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, 본 법인은 필요에 따라 국내외에 지부 또는 부설연구원을 부설할 수 있다.

제4조(사업)

본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행한다.

1. 민주주의의 체계적, 학술적 토론을 위한 정기학술회의 개최
2. 한국 민주주의의 과제 및 미래를 제시하는 서적 발간
3. 성숙한 민주주의 구현의 실천적 방안을 논의하는 워크숍 개최
4. 국내외 민주주의 연구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
5. 국내외 민주주의 연구기관 및 연구자와의 연계를 통한 네트워크 구축
6. 민주시민, 세계시민 육성을 위한 리더십 프로그램 운영
7. 차세대 리더십 교육교재 개발
8.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수익사업
9. 기타 본 법인의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사업 등

제5조(법인 공여 이익의 수혜자)

① 본 법인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.

② 본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, 출신학교, 근무처, 직업 또는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.

제2장 회원

제6조(회원)

- ① 본 법인의 회원은 정회원, 일반회원, 평생회원 및 기관회원으로 구성한다.
- ② 정회원은 민주주의를 연구하는 자로서 본 법인의 일반회원 가운데 이사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 의결을 받은 자를 말한다.
- ③ 일반회원은 본 법인의 목적과 사업에 찬동하는 자로서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회비를 납부한 자를 말한다.
- ④ 평생회원은 회원으로서 5년 이상 재적하고 회비 100만원 이상을 납입할 경우 이사회 의결로 평생회원이 될 수 있다.
- ⑤ 기관회원은 대학, 연구기관 및 각종 도서관에서 도서구입, 자료요청 등으로 인하여 입회를 원할 경우 이사회 의결로 입회할 수 있다.

제7조(회원의 권리·의무)

- ① 회원은 본 법인의 운영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하며, 본 법인의 각종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.
- ② 회원은 정관, 시행세칙 및 총회 결정사항을 준수하고 본 법인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지며 총회에서 정한 입회금 및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
제8조(회원의 자격상실)

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원은 그 자격을 상실한다.

1. 본인의 탈퇴신고
2. 회원의 사망
3. 회원의 제명

제9조(제명)

- ① 회원이 본 법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때 또는 본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로 제명할 수 있다.
- ② 제명에 관한 총회의 의결은 회원 3/4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.

③ 회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거나 제명을 당하였을 때에는 기존에 납입한 일체의 회비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.

제3장 자산 및 회계

제10조(자산의 구성)

본 법인의 자산은 다음 각호에 기재한 것으로 구성한다.

1. 회원의 연회비
2. 자산으로 생기는 과실
3. 사업에 따른 수입
4. 기부금 및 후원금
5. 학술용역사업
6. 기타 수입

제11조(자산의 구분)

① 본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 2종류로 구분한다.

② 기본재산은 다음 각호에 기재한 것으로 하고, 기본재산이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.

1.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자한 재산
2. 기부에 의거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, 기부 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.
3.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
4. 세계(歲計)잉여금 중 적립금

③ 본 법인의 설립당시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1과 같다.

제12조(자산의 관리)

① 제11조 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, 증여, 임대, 교환, 담보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② 법인의 매수, 기부채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.

③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·보존 및 기타관리(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)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④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목록을 변경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.

제13조(재산의 평가)

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. 다만,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

제14조(경비지출)

본 법인의 경비는 보통재산에서 지출하며, 본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, 사업수익, 회원의 회비 및 기타수입 등으로 조달한다.

제15조(회계의 구분)

① 본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한다.

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장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.

③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동비용 배분에 관한 법인세관련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.

제16조(회계원칙)

본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 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.

제17조(자산의 관리)

본 법인의 자산은 이사회 의결에 의해 이사회에서 정한 관리방법에 따라 이사장이 관리하되, 자산 중에서 현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국채 또는 공채 등 위험성이 낮은 유가증권으로 바꾸어 보관한다.

제18조(잉여금의 처분)

회계연도 말에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 의결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거나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시킨다.

제19조(세입·세출 예산)

본 법인의 세입·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사회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에 제출한다.

1.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1부.

2.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1부.

제20조(특별회계)

- ① 본 법인은 수익사업을 행하거나 또는 기타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 의 결의에 의하여 특별회계를 둘 수 있다.
-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회계는 전조의 세입·세출예산에 계정하여야 한다.

제21조(수익 등의 사용)

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회계로부터 생긴 수익 또는 잉여금은 이를 모두 기본재산이나 보통재산으로 하여야 한다.

제22조(회계연도)

본 법인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제23조(예산외의 채무부담 등)

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 의 결의와 총회의 승인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당해 연도의 수익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(이하 “장기차입”이라 한다.)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장기차입금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다.

제24조(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)

① 본 법인의 재산은 본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 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.

1. 본 법인 설립자
2. 본 법인의 임원
3.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
4. 본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

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.

제25조(회계감사)

감사는 연 1회 이상 회계감사를 하여야 한다.

제26조(임원의 보수)

비상근 임원의 보수는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소정의 실비는 변상할 수 있다.

제4장 임원

제27조(임원의 종류와 정수)

① 본 법인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.

1. 이사 11인 (이사장 1인 포함)
2. 감사 2인

②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본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

1. 미성년자
2.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
3.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4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5. 공익법인설립·운영에관한법률 제14조 제2항에 따라 임원 취임승인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③ 이사의 과반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한다.

제28조(고문 추대)

본 법인에는 약간명의 고문을 둘 수 있으며, 고문은 본 법인의 사업에 찬동 협조하는 저명한 인사로서 이사장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 결의로 추대한다.

제29조(임원의 임기)

① 임원의 임기는 4년, 감사의 임기는 2년을 초과할 수 없다. 단, 연임할 수 있다.

②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총회에서 보선하고,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제30조(임원의 선임방법)

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.

② 상임이사를 임명하는 경우에는 이사장이 추천하고 이사회 동의를 받아 임명한다.

③ 임기전 임원의 해임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④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.

제31조(임원선임의 제한)

① 이사회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에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제29조의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.

② 감사는 감사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1항에 규정한 특수 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.

제32조(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)

①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.

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.

제33조(임원의 직무)

① 이사장은 본 법인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상임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고 이사회에 일상 업무를 담당한다.

③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장으로부터 위임 또는 제의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

제34조(이사장의 직무대행)

① 이사장이 유고시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을 대행한다.

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을 대행한다.

③ 제2항의 지명을 위한 이사회는 1) 이사정원의 과반수의 이사가 소집하고, 2) 이사정원의 3분의 2이상의 출석에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, 3) 출석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이사장 직무대행자를 보선한다.

제35조(감사의 직무)

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.

1.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
2. 이사회에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 하는 일
3. 제1호 및 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이사회, 총회에 그 사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치 않을 때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

4.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총회 또는 이사회를 소집을 요구하는 일.
5. 법인의 재산 상황 또는 총회, 이사회를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총회,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

제5장 총회

제36조(총회의 기능)

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

1.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
2.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
3. 재산의 매도, 증여, 담보제공, 대여, 취득 및 기채
4. 예산 및 결산의 승인
5. 사업계획의 승인
6. 기타 중요한 사항

제37조(총회의 소집)

- ①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나누되, 정기 총회는 년 1회 회계연도 마감 후 2월내에 소집하며,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- ② 이사장은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총회 7일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- ③ 총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.

제38조(총회의 의결정족수)

- ① 총회는 회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
- ② 전항의 의결권은 총회에 출석하는 사람에게 위임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임장을 작성, 회의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39조(총회 소집의 특례)

-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 1. 제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 2. 제35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
 3. 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
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서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 그 의장을 지명한다.

제40조(총회 의결 제척사유)

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
1.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
2.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원 자신과의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.

제6장 이사회

제41조(이사회 기능)

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, 의결한다.

1.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
2.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
3. 예산,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
4.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
5. 운영규정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
6.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
7. 기타 중요한 사항

제42조(의결 정족수)

- ① 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 하면 개최하지 못한다.
- ② 이사회 의결은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
-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- ④ 이사회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.

제43조(이사회 소집)

-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-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7일전에 그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 게 통지하여야 한다.

③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. 다만,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.

제44조(이사회 소집의 특례)

①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
1.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2. 제35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

②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소집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 그 의장을 지명 한다.

제7장 조직

제45조(위원회)

① 본 법인에 기획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를 둔다.

② 위원회 위원은 본 법인에 적극 협조하는 신망 있는 유능한 회원 중에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이사장이 위촉한다.

③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을 두며, 이사회에서 이를 정한다.

제46조(사무국의 설치)

① 본 법인의 사무를 원만히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장을 둔다.

② 사무국에는 국장 1인과 직원 약간명을 둘 수 있다.

제47조(임용 및 직무)

① 사무국장과 직원은 이사장이 임명한다.

② 사무국장은 이사회 및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제반업무를 처리한다.

③ 직원은 사무국장을 보좌하여 일상업무에 종사한다.

제8장 보칙

제48조(정관의 변경)

본 정관은 총회에서 출석회원 2/3 이상의 동의를 얻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.

제49조(해산, 잔여재산의 처분)

① 본 법인은 민법 제77조 및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다.

② 총회원 3/4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2/3 이상의 찬성으로 법인을 해산할 수 있다.

③ 본 법인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무상 출연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.

제50조(시행세칙의 제정)

본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칙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.

제51조(공고사항 및 방법)

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를 매일경제신문 및 본 법인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행한다.

1.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
2. 기타 법인운영에 있어 공고가 필요한 중요 사항
3. 법인의 해산

제52조(기부금의 공개)

본 법인은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기부금의 활용실적을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 해 3월말까지 공개하여야 한다.

제9장 부칙

제1조(시행일)

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, 동일자로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설립당시의 회원 및 임원 등)

① 본 법인의 설립 당시의 회원은 본 법인의 회원으로 본다.

② 본 법인의 설립당시 이사 및 감사는 본 정관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본다. 설립당시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본 정관의 규정에 의한다.

2015년 10월 8일

이사장 이충묵 (인)

이사 강원택 (인)

“ 고세훈 (인)

“ 김왕식 (인)

“ 김은기 (인)

“ 김태현 (인)

“ 남궁곤 (인)

“ 성민섭 (인)

“ 유현석 (인)

“ 진영재 (인)

“ 최진우 (인)

감사 김상준 (인)

“ 윤성이 (인)